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6 발의연월일: 2020. 6. 15.

발 의 자:최인호·박재호·전재수

송갑석・어기구・김홍걸

민홍철 · 조승래 · 양향자

강훈식 · 송기헌 의원

(119]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 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그런데 새로 신설되거나 편입되는 공공기관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 해당 기관들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들 기관의 추가지방이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역인재 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새로 공공기관을 설립할 때 지방에 우선적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바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전공공기관의 범위에 부속 연구기관이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18 조제1항).
- 나. 정부는 공공기관을 신설하려는 경우 공공기관이 지방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소재지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 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이전대상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 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고,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역인재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를 "부속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정부는 공공기관을 신설하려는 경우 공공기관이 지방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주무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인가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이전대상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재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법률 제17191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5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지역인재의 채용)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 법」 제29조의2제1항의 지역인재를 말한다)로 채용하여야 한다.

-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라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는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인재를 채용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역인재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공공기관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혁신도시 활성화) 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u>이하</u>	<u>부속</u>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	
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	
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	
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	
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u><신 설></u>	② 정부는 공공기관을 신설하
	려는 경우 공공기관이 지방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u>하여야 한다.</u>
<u> <신 설></u>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
	가를 하는 주무기관의 장은 같
	은 조 제1항제3호에 대하여 국
	<u>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u>
	을 거친 후 인가하여야 한다.
<u><신 설></u>	④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

② ~ ④ (생 략)

법률 제17191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u>신</u> 설>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이전대상공 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재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법률 제17191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5(지역인재의 채용)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혁신도시 조성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제1항의 지역인재를 말한다)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라 라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는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인재를 채용한 것으로 본 다. 치) ① (생략)

-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8. (생략) <신 설>
- 9. ~ 12. (생략)
- ③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역인재 채용계획을 수 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 제22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 치) ① (현행과 같음)

- 1. ~ 8. (현행과 같음) 8의2. 공공기관의 소재지에 관 한 사항
- 9. ~ 12.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